

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908
----------	-----

2015. 12. 18
도시계획관리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1. 제안경위

- 2015. 11. 24일 우미경 의원 발의(2015. 11. 24일 회부)

2. 제안이유

- 주거실태조사를 시행 전에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관련법령에 맞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주거실태조사 실시 전 통계청장 승인 부분을 삭제함(안 제5조의2)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상위 법령인 「주택법」 제5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이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며, 통계승인(협의)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「통계법」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, 주요 내용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새로운 통계 작성은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에 근거한 통계 작성은 통계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.

□ 통계청 통계승인 및 협의 관련 규정

○ 통계법 제18조(통계작성의 승인)

-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, 종류, 목적, 조사대상, 조사방법,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○ 통계법 제20조(통계작성의 협의)

-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중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협의를 거친 사항을 변경하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- 다만, 주거실태조사는 「서울특별시 주택 조례」와 「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」에 규정되어 있는데(붙임1), 올 12월 23일 「주택법」 제5조(주거실태조사)가 삭제되고 「주거기본법」 제20조(주거실태조사)가 시행될 예정으로(붙임2), 「주거기본법」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및 주거복지 기본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음.

- 참고로, 주거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일반조사 및 정책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¹⁾, 서울시는 정책적 필요나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비정기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뿐으로 정기적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음.

1) 일반조사(2006년부터 짝수해, 총5회), 정책조사(2007년부터 홀수해)

※ 2007년 노인가구, 2009년 장애인가구, 2011년 임대주택거주가구, 2013년 저소득가구, 2015년 장애인가구(시행중)

※ 2014년부터 주거실태조사와 별도로 신혼부부가구에 대한 패널조사를 실시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의2(주거실태조사) ① 시장은 「주택법」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<u>관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조사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</u>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완료 후 주민 재정착률</p> <p>2~4. <생략></p> <p>② <생략></p>	<p>제5조의2(주거실태조사) ① ----- ----- -----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1. 「<u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</u>」 ----- ----- -----</p> <p>2~4. <생략></p> <p>② <생략></p>

<붙임 1>

서울특별시 주택 조례	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
<p>제5조의2(주거실태조사) ① 시장은 「주택법」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관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조사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완료 후 주민 재정착률 2. 주택 매매가격 및 임대가격(전·월세) 3. 1인·고령자·장애인 가구 4. 그 밖에 주택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p>② 시장은 제1항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되, 정기조사는 「통계법」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와 함께하여야 하고, 수시조사는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정하여 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주거실태조사) ① 시장은 주거약자의 주거 및 주거환경, 가구특성 등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가구특성 2. 주택의 유형, 규모 및 점유형태 3. 주택의 시설 및 설비 4. 주거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5. 주택가격 및 임대료 6. 주택법 제5조의2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7. 그 밖에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한다.</p> <p>③ 시장은 주거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일시, 조사목적 및 내용,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⑤ 주거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규</p>

	<p>정한 사항 외의 규정에 대해서는 주택법,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.</p> <p>⑥ 주거실태조사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</p>
--	---

<붙임 2>

주택법	주거기본법
제5조 삭제 <2015.6.22.>	[제정 2015.6.22.]
[시행일 : 2015.12.23] 제5조	[시행 2015.12.23.]
<p>제5조(주거실태조사) ① 국토교통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.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주거실태과약을 위한 사항 <p>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하는 주거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, 수시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	<p>제20조(주거실태조사) 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(이하 "주거실태조사"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.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.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주거실태과약을 위한 사항 <p>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. 신혼부부, 장애인 및 고령자 3.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<p>③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시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</p>

<p>다른 혼인의 신고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혼부부</p> <p>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</p> <p>④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하는 주거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.</p> <p>⑤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주기·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정할 수 있다.</p> <p>④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복지 및 주택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⑤ 주거실태조사의 주기·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
---	--

<붙임 3> 주택법 시행령

제6조(주거실태조사)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지역별 주택의 유형, 규모 및 점유형태
2. 주택의 시설 및 설비
3. 주거환경 만족도
4. 주택가격 및 임대료
5. 향후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계획
6. 가구의 구성 및 계층별 소득수준
7.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중 정기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.

1. 정기조사: 주택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
2. 수시조사: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

④ 주거실태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 다만, 조사의 성격에 따라 조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일시, 조사목적 및 내용,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